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837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변론 종결2021. 6. 1.

판결 선고2021. 7. 2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초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약정은 1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8. 2. 10.자 152,000,000원 대여금 채권에 따른 청구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 E, F는 2013. 1. 1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중 각 지분(D: 3/7, E, F: 각 2/7)에 관하여 1999. 2. 2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4. 1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4. 12. 이후 D에게 매매대금으로 15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하였다.

3) 피고 B는 2018. 7. 초순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함).

① 피고 C은 매매대금으로 D에게 500,000,000원, 피고 B에게 150,000,000원 지급

②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채무 25,000,000원 인수

③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330,000,000원 중 12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상계

4) 피고 C은 2018. 7. 3. D에게 500,000,000원, 2018. 7. 8.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7. 3. D, E,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경 피고 B에 대하여 152,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B는 2018. 7. 초경 채무초과상태였고,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함) 외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이 사건 양도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동일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인 1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은, 원고가 2018. 7. 3.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고,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알았다는 전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행이 용이한 재산으로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피고 B는 D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에도 D에 대한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은 2018. 7. 3. D에게 피고 B가 지급하지 못한 매매잔금 상당액인 500,000,000원을 지급하며 D, E, F와 별개의 매매계약을 작성한 후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동일하게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김동욱

별지